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 합 임 시 총 회

○ 총회일시 : 2016년 9월 4일(일요일) 오후 2시

○ 총회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과천시 통영로 5 (중앙동 6-2) 소재)

※ 총회 참석시 본 책자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29, 501호 (중앙동,고려빌딩) / 전화 : 02-504-6800>

조합임시총회 소집 공고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조합 정관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의거 2016년도 조합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6년 9월 4일(일) 오후 2시
2. 장 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통영로 5 (중앙동 6-2) 소재)
3. 안 건
   - 제 1호 안건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
   - 제 2호 안건 :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식 결정의 건
   - 제 3호 안건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4. 참석대상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5. 총회참석시 구비서류

1) 조합원 본인참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조합원 1인만 참석 가능)

2) 대리인 참석시(조합정관 제22조 제4항)

① 위임장(조합양식, 조합원 인감도장날인 필),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총회참석위임용)

②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조합원 본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1통 첨부

③ 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 등

3)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조합정관 제22조 제3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결의서(조합 양식)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총회전일인 2016년 9월 3일(토) 오후6시까지 조합사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유효하게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함

6. 문 의 처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2-504-6800)

2016년 8월 19일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조합임시총회에 따른 공지사항

1. 우리 과천주공1단지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시기 전에 발송해 드린 총회 책자를 반드시 읽고 총회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금번 조합원총회는 조합정관 제20조에 의거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 발의서(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 관련)를 제출하여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조합원의 10% 이상 직접 참석 및 과반수 이상이 참석(서면포함)하셔야 성원이 되는 총회입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신청 방법에 대하여도 총회에서 결정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조합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시어 총회 참석을 위임하거나 대리인 참석도 어려우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의 소중한 의결권을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총회 당일 회의장에는 조합원 본인(공동소유일 경우 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 비표를 부착한 **1인만 입장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참석시 지참물	
조합원 본인 직접참석시	① 총회책자 ② 신분증 ③ 도장(조합원)
대리인 참석시	① 총회책자 ②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③ 위임장(동봉양식/조합원 인감도장 날인/조합원 인감증명서 첨부)** **④ 조합원 본인과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등) 첨부** **→ 위임장을 작성하여 오시는 경우 위임자(조합원) 란에 반드시 조합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고,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장에 오시는 경우 반드시 조합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자, 1세대의 경우	① 총회책자 ② 신분증 ③ 도장(대표조합원 본인) **→ 대표자선임동의서에 대표자로 표기된 분만 참석가능하며,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공유자들이 대표자선임동의서를 작성(각 지장날인)하고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각1부씩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표자선임동의서상의 대표자가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리인 참석시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총회불참시 (서면결의시)	서면결의서 제출(동봉양식) **→ 동봉한 서면결의서에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 2016년 9월 3일(토) 오후6시까지 직접(인편) 또는 동봉한 수취인(조합) 부담 등기우편봉투를 이용하여 우체국에 접수하여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편접수시 우체통 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조합 도착기간이 장기간(10일 이상) 소요되므로 반드시 우체국을 방문하시어 동봉한 회신용봉투의 빠른등기우편(우편료 조합부담)으로 보내셔야 2일안에 조합에 도착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 일 시 : 2016년 9월 4일(일) 오후 2시

■ 장 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과천시 통영로 5 소재)



• 지하철 :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하차 → 10번, 11번 출구 방향
→ 시민회관 지하통로 연결

• 버 스 :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하차
일반버스: 9, 9-3, 1-1, 917, 11-1, 11-2, 11-3, 11-5,
103, 777, 공항버스 8842(죽전-인천공항)
직행버스: 1550-3, 7007-1, 3030
Ⓑ 간선 540, 541, 542, 441, 502, 7002 Ⓡ 광역 9503

조합장 인사말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사업시행변경총회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뵙게 됩니다.
예전에 없던 폭염의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조합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4개월만에 이주를 완료하고 다음 절차인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총회는 지난 2013년 11월 17일 총회에서 의결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조합정관 제20조에 의거 총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조합원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를 묻는 총회소집 발의서를 제출하시어 조합원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없던 임시총회 개최이고, 비용지출과 분양수익증가의 상관관계가 있는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예상일정은 철거가 진행되면서 병행하여 9~10월에 조합원분양(평형변경) 신청을 실시하고 10~11월에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에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빡빡한 일정이지만 조합임직원은 앞으로도 일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도 항상 건강하시어 조합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이 동 인

목 차

Ⅰ. 회 순 ····· 13

Ⅱ. 보 고 사 항 ····· 17

1. 경과보고

Ⅲ. 안 건 심 의 ····· 23

- 제 1호 안건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
- 제 2호 안건 :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식 결정의 건
- 제 3호 안건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 기타 서류 - 총회대리참석 위임장 (양식) ·····

Ⅰ. 회 순

◈ 회 순 ◈

1. 성 원 보 고

2. 개 회 선 언

3. 국 민 의 례

4. 조합장 인사말

5. 보 고 사 항

- 경과보고

6. 상정안건 심의

- 제 1호 안건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
- 제 2호 안건 :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식 결정의 건
- 제 3호 안건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7. 폐회선언

Ⅱ. 보 고 사 항

경 과 보 고

■ 경 과 보 고 ■

일 자	사업 추진 내용	비 고
06.17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	
06.17	조합설립변경인가 접수	
06.22~	▸ 협력사 회의(수목 및 지장물 관련)	
06.23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통보 안내문 발송(3차)	
06.29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명회(총회소집 발의 관련)	
06.29	▫ 제84차 이사회	
07.04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석면감리, 소방통신감리)	
07.06	**조합설립변경인가** - 대의원변경, 조합원명의변경, 정관변경 등	
07.12	2016년 2/4분기 내부회계감사	
07.13	▫ 제85차 이사회	
07.14	구역 경계측량(측량업체&조합&시공사(철거업체))	
07.15	소식지 발송(15차)	
07.21	▫ 제86차 이사회	
07.22	**총회소집 발의 조건 충족** - 전체조합원 5분의 1이상 발의서 제출	
2016.07.27 ~08.11	**사업시행(변경)계획(안) 공람•공고**	
07.29	▪ 22차 대의원회	
08.03	철거•공사 관련 설명회 - 인근 학교 학교운영회(과천외고등)	
08.04	철거•공사 관련 설명회 - 단독주택 주민 등	
08.10	▫ 87차 이사회	
08.17	철거•공사 관련 설명회 - 인근 학교 학교운영회(과천외고등)	
08.18	▪ 23차 대의원회	
08.19	총회개최 공고	
09.04	**조합임시총회 개최** (예정)	

Ⅲ. 안건심의

제 1호 안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

제 1호 안건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 』

1. 안건상정

제1호 안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지난 2013년 조합임시총회(2013.11.17.)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기로 의결되어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으나,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에 의거 전체조합원 5분의 1 이상 조합원(전체조합원 1,050명 중 225명)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관련하여 총회소집 발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찬성/반대)를 금번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결시 설치방식은 기 결의된 방식(제18차 대의원회, 2015.11.03. 음식물쓰레기-각층투입방식, 일반쓰레기-옥외투입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 첨부 : 1.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여부 비교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관련 진행경과
3.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
4.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사례)

3. 의결근거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② 조합정관 제20조 및 제21조, 제22조

4. 의결사항

2016년 9월 4일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총회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을 의결합니다.

2016. 9. 4.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총회 참석자 일동

(서면결의서 포함 총 명)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여부 비교

구분	찬성시 (쓰레자동집하시설 설치)	반대시 (기존 재래식)
시스템 설명	투입구에 봉투채 쓰레기를 버리면 관로를 통하여 쓰레기집하장까지 자동으로 수거하는 시스템 (RFID방식 채택)	현재 수거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쓰레기수거차량이 각동을 이동하며 수거하는 방식 (RFID방식 채택)
장점	-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단지 개선 효과 - 강남•서초 재건축 단지와 동등한 시설로 재산가치 상승 - 단지내 쓰레기 수거차량 이동 없음 - 사용자 편리성	- 경제성이 좋다 - 유지관리비 거의 없음
단점	- 설치공사비 지출 - 유지관리비 지출	- 쓰레기 수거차량 단지내 진입으로 소음 등 환경저해 - 음식물 침출수나 부패로 인한 악취
비용	설치공사비(약66억원, 부가세별도) 유지관리비(세대당 월4~6천원)	파고라 + 쓰레기통 설치비용 (자동화시설에 비해 극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관련 진행경과

일자	내용	비고
2013.08.13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단지 견학(1차) - 과천3단지, 과천11단지, 일산자이, 흑석동 푸르지오	
11.17	조합원총회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하기로 의결(찬성80.7%)	
12.17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단지 견학(2차) - 용산 센트레빌, 광명4개단지(삼성등)	
12.30	제9차 대의원회 - 쓰레기처리방식 의결(음식물·일반쓰레기 모두 옥외방식)	
2015.06.02	조합홈페이지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방식 재검토 요청	
06.26	타단지 쓰레기 처리방식 견학	
11.03	제18차 대의원회- 쓰레기처리방식 의결(음식물쓰레기-각층 투입방식, 일반쓰레기-옥외투입방식)	
12.05	제19차 대의원회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업체 선정(OH시스템)	
2016.02.05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업체 계약체결(OH시스템)	
07.22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여부 총회소집 발의서 제출 - 225명 (조합원 5분의 1 이상)	
09.04	조합원총회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 상정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

○ 임시총회 소집 목적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

○ 임시총회 소집 발의 동의서 제출자 : 정명화 외 221 명

상기 임시총회 소집 발의인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에 의거 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자가 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 첨부 :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 (222)부.

2016년 7 월 27 일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대표 : 정명화 정명화 (서명 또는 날인)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 소집요청서 제출 후 추가 3명이 발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총225명이 제출함.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사례)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

1. (주택 및 점포) 조합원 인적사항

소유권구분	동 호		
성 명	정 명 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 안양시 [illegible]		
전화번호	[illegible]	휴대전화	[illegible]

과천 114-502

2. 요청사항

1) 목적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관련

2) 안건 : 제1호 안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

(설치 결의시 방식은 기결의(제18차 대의원회, 2015.11.3.)된 방식에 따름)

- 구체적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시 제시하기로 한다.

3. 관련 근거

■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회 개최 요구 시에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으로 총회개최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도장이 변경된 조합원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4. 발의내용

상기 본인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제시한 관련 근거에 따라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에 동의합니다.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이주계획 신청시 이후 인감도장이 변경된 경우)

2016년 6 월 30 일

위 총회 소집발의 동의자 정 명 화 (인감날인)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하

제 2호 안건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법 결정의 건

제 2호 안건
『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법 결정의 건 』

1. 안건상정

제2호 안건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설계 변경안(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에 대하여 신축건물 조합원 분양(평형변경)신청을 진행하여야 함에 분양(평형변경)신청 방법 2가지 안(①평형만 신청안, ②평형•타입 신청안) 중 조합원총회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를 득한 안으로 분양(평형변경)신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안이 없을 경우 다득표한 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첨부 : 조합원 분양(평형변경)신청 방법

3. 의결근거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② 조합정관 제21조 및 제22조

4. 의결사항

2016년 9월 4일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분양(변경)신청 방법 결정의 건을 의결합니다.

2016. 9. 4.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총회 참석자 일동

(서면결의서 포함 총 명)

조합원 분양(평형변경)신청 방법

■ 조합원 분양(평형변경)신청 방법

구분	① 평형만 신청 (조건부 희망블록 선택)	② 평형 • 타입 신청
신청 분류	59형, 84형(1,6블록), 109형(4,5블록),, 등 (16개형)	59A, 59B, 84A, 84B. 84C, 84D, 109A,,, 등 (15개형)
방법	각 지망별 권리가액 다액순에 의한 배정을 원칙으로 함	
	신청평형에 의한 평형배정 후 희망블록(1순위에 한함)을 조사하여 희망블록으로 배정하되, 희망블록에 경합이 있을 경우 블록 구분없이 평형별로 배정	희망 평형 및 타입까지 신청
장점	- 희망평형 배정확률 상대적으로 높음 - 블록 신청 기회(1순위에 한함)가 주어져 희망블록 배정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타입 신청기회 주어져 희망타입 선택가능
단점	- 타입 신청이 제한되므로 비선호타입 배정가능성 있음	- 권리가액이 높은 세대도 1순위 타입 경쟁에서 떨어질 경우 희망평형조차 배정이 안 될 수 있음 - 일부 타입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 인기 타입임에도 저층 배정될 수 있음
적용 단지	과천7-2단지, 과천2단지, 개포시영, 개포주공2단지 등(평형만 신청 보완)	과천7-1단지, 과천6단지

① 평형만 신청 (1순위만 희망블록선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세대수	1순위 선택			2순위 선택	3순위 선택	4순위 선택	5순위 선택
		평형	희망블록(조건부)					
59㎡ (25.11평형)	462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 (32.66평형)	537	(서명 또는 지장날인)	1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44		6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09㎡ (40.48평형)	38	(서명 또는 지장날인)	4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68		5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11㎡ (41.39평형)	60	(서명 또는 지장날인)	1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6		5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0㎡ (43.73평형)	100	(서명 또는 지장날인)	1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20		4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6㎡ (46.18평형)	40	(서명 또는 지장날인)	4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8		6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31㎡ (47.73평형)	103	(서명 또는 지장날인)	1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20		6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51㎡ (55.87평형)	20	(서명 또는 지장날인)	4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32		5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208㎡ (76.36평형)	3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 조건사항 : 희망블록에 경합이 있을 경우 블록 구분없이 평형별로 배정함.

② 평형 • 타입 신청

주택규모•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1순위 선택	2순위 선택	3순위 선택	4순위 선택	5순위 선택
59㎡-A (25.06평형)	384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59㎡-B (25.40평형)	78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A (32.65평형)	184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B (32.66평형)	131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C (32.71평형)	219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D (32.50평형)	47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09㎡-A (40.48평형)	106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11㎡-A (41.39평형)	66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0㎡-A (43.62평형)	100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0㎡-B (44.28평형)	20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6㎡-A (46.18평형)	58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31㎡-A (47.47평형)	103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31㎡-B (49.07평형)	20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51㎡-A (55.87평형)	52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208㎡-A (76.36평형)	3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① 평형만 신청

[예시] 1순위로 111㎡형 5블록을 신청한 경우

⇒ 권리가액 순으로 66명까지 111㎡형에 배정하고, 5블록 희망자가 6명 이내이고 1블록 희망자가 60명 이내이면 희망블록 5블록에 배정됨. 만일 5블록 희망자가 6명을 초과하거나 1블록 희망자가 60명을 초과하면 블록은 동호수추첨시 결정됨.

1순위에서 경합에 떨어진 경우 2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평형만 권리가액순으로 배정함

주택규모 (전용면적)	세대수	1순위 선택			2순위 선택	3순위 선택	4순위 선택	5순위 선택
		평형	희망블록(조건부)					
59㎡ (25.11평형)	462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 (32.66평형)	537	(서명 또는 지장날인)	1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44		6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09㎡ (40.48평형)	38	(서명 또는 지장날인)	4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68		5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11㎡ (41.39평형)	60		1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6		5블록					
120㎡ (43.73평형)	100	(서명 또는 지장날인)	1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20		4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6㎡ (46.18평형)	40	(서명 또는 지장날인)	4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8		6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31㎡ (47.73평형)	103	(서명 또는 지장날인)	1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20		6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151㎡ (55.87평형)	20	(서명 또는 지장날인)	4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32		5블록	(서명 또는 지장날인)				
208㎡ (76.36평형)	3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② 평형 • 타입 신청

[예시] 1순위로 84㎡-A형 신청한 경우

⇒ 권리가액 순으로 184명까지 84㎡-A형에 배정하고 블록은 동호수추첨시 결정됨.
1순위 경합에서 떨어진 경우 2순위부터 5순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함

주택규모•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1순위 선택	2순위 선택	3순위 선택	4순위 선택	5순위 선택
59㎡-A (25.06평형)	384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59㎡-B (25.40평형)	78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A (32.65평형)	184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B (32.66평형)	131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C (32.71평형)	219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84㎡-D (32.50평형)	47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09㎡-A (40.48평형)	106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11㎡-A (41.39평형)	66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0㎡-A (43.62평형)	100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0㎡-B (44.28평형)	20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26㎡-A (46.18평형)	58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31㎡-A (47.47평형)	103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31㎡-B (49.07평형)	20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151㎡-A (55.87평형)	52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208㎡-A (76.36평형)	3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제 3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 3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1. 안건상정
제3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사유
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석면해체•제거감리업체 (주)한국석면안전진단 선정 및 계약 체결과 소방•정보통신감리업체 (주)한일엠이씨의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총회에서 추인받고자 합니다.

나. 또한 재건축사업구역 내 1-1블록의 문화재표본시굴조사를 위해 국방문화재연구원과 추가용역 계약과, 관리처분(변경)계획 업무 수행을 위해 (주)석진플랜과 특약을 체결, 설계변경에 따른 친환경 관련 녹색건축 예비인증 재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업체 (주)건축환경에너지평가원 화인과 추가용역 계약 체결함을 총회에서 추인받고자 합니다.

구 분	업체명	계약일 (약정일)	비 고
소방통신감리업체	(주)한일엠이씨	2016.08.11	용역금액 2억7천만원, VAT 별도
석면감리업체	(주)한국석면안전진단	2016.08.11	용역금액 6천만원, VAT 별도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	(주)석진플랜	2016.08.11	용역금액 3억8천만원, VAT 별도 (관리처분(변경)계획 용역)
문화재표본조사	국방문화재연구원	2016.07.04	용역금액 3천8백만원, VAT 별도 (1-1블록 문화재표본조사 용역)
친환경업체	(주)건축환경에너지 평가원 화인	2016.08.11	용역금액 2천만원, VAT 별도 (녹색건축 재인증 용역)

※ 첨부 : 협력업체 용역계약서

3. 의결근거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② 조합정관 제21조 및 제22조

4. 의결사항
2016년 9월 4일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총회에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을 의결합니다.

2016. 9. 4.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총회 참석자 일동
(서면결의서 포함 총 명)

협력업체 용역계약서

구 분	업체명
소방 • 정보통신감리업체	(주)한일엠이씨
석면해체 • 제거감리업체	(주)한국석면안전진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리처분변경용역)	(주)석진플랜
문화재표본조사	국방문화재연구원
친환경업체 (녹색건축 예비인증 재인증)	(주)건축환경에너지평가원 화인

소방•정보통신감리업체

((주)한일엠이씨)

공사감리 용역계약서(소방·정보통신분야)

1. **공사감리 용역명**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방·정보통신감리용역
2.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번지 일대
3. **감리용역 수행기간** : 2017. 5. ~ 2019. 5. (25개월)
4. **감리용역 계약금액(부가세별도)** : 일금이억칠천만원정(₩:270,000,000)
5. **공 사 개 요**
   1) 대지면적 : 96,128.20㎡
   2) 건축연면적 : 305,356.66㎡
   3)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층 수 : 공동주택32개동(지하2층 ~ 지상28층)
   5) 허가(인가신고)일 : 2015년 6월 17일 (허가번호 제 호)

"갑" 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첨부 : 1. 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1식.
2. 감리입찰내역서 1부.

2016년 8월 11일

발 주 자 (갑)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29, 고려빌딩 501호

대표자 : 과천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동인 (인)

전 화 / Fax : 02-504-6800/02-504-6226

공사감리자(을)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양평동3가,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8층)

대표자 : ㈜ 한 일 엠 이 씨 정 차 수 (인)

전 화 / Fax : 02-6340-3000 / 02-6340-3019

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 칙)

이 계약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의하여 발주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 (업무 기간)

①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한다.

2017년 5월 일~ 2019년 5월 일(25개월)

② 착수일이 연기되었을 때에는 실제 상주기간으로 산정하여 금액 변동없이 계약 연장한다.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 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 기준 및 방법은 관련법의 감리배치기준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 불 시 기	지 불 금 액 (부가세별도)	비 고
매월 1회	₩10,800,000원	1개월마다 ₩10,800,000원을 25회 지급
합계	₩270,000,000원	

제4조 (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의 기본업무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대가의 조정)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① "갑"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이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을"에게 자료의 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관련시설물 공사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3. 시공계획서, 실시도면 및 공정표
4.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5.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서

6. 기타 공사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을"은 관련시설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업무의 착수 시기)

① "갑"은 착공 3일전까지 "을"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 한다.

② "을"은 감리원을 배치시 "갑"에게 감리원에 대한 경력 확인을 승인 후에 배치한다.

③ "을"은 감리원 배치 또는 변경시 7일 이내에 관련기관 및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공사시공자에게 "을"의 인적사항을 착공 전까지 통지한다.

제8조 (업무의 수행)

①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시설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시설물 공사감리 세부기준에 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소방,통신공사업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④ "을"는 공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을"은 공사업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에게 보고한다.

⑥ "갑"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정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관련기관에게 보고한 "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가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갑"은 공사업자가 "을"의 시정·재시정 또는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9조 (현장 확인 지도)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진행을 하게한다.

1. 공사착공시
2. 관련시설물배치, 기초공사시
3. 기초 및 접지공사시
4. 배관공사시
5. 배선공사시
6. 주요 통신/소방시설 설치시
7. 기타 시설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부분의 공사시

제10조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① "을"은 공사의 주요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의 확인과 관련시설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 관련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상세시공 도면의 작성 요청 등)

① "을"은 시설물공사의 경우에 공사업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작성된 상세시공조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 (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갑" 또는 공사업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7일전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시설물의 품질확보, 공사업자의 기술력확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 수 있다.

제13조 (감리 보고서 등)

①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분기 별로 통보하되 공기가 2년 이상인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감리일자와 공사감리수급대장을 기록·유지한다.

제14조(감리 보조원 등)

① "을"을 대리하여 감리보조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감리보조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3일 이내에 "갑"과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한다.

③ "을"은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보조원의 신상명세, 자격여부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공사현장에 비치한다.

제15조 (자재의 검사 등)

①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갑"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결과를 확인·검토한다.

③ "갑" 또는 공사업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전까지 "을"에게 통지한다.

④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갑"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9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부득이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 전에 통지한다.

제20조 (손해 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을"의 면책 사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감리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사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시공자가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시공자가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기성공사비의 지불 검토)

① "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다른공사에 대한 확인 점검)

① "갑"이 다른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갑"은 "을"이 건축 및 기계설비 등의 다른 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4조 (비밀 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외주의 제한)

① "을"은 공사감리업무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전문가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진다.

③ 외주를 주는 경우에 대가의 지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26조 (분쟁 조정)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습법,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통지·통보 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의 관련된 사항을 통지,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 통보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통보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석면해체•제거감리업체

((주)한국석면안전진단)

석면해체•제거감리용역 계약서

1. 공 사 명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비산농도측정포함) 감리용역

2. 공 사 현 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번지 일원

3. 공 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4. 계 약 금 액 : 일금 육천만원정 (₩60,000,000 / 부가세별도)

5. 지 급 방 법

차수	지급예정일		금 액	부가가치세	합계
계약금	계약시	30%	18,000,000	1,800,000	19,800,000
1차	석면해체·제거 50% 도달시	30%	18,000,000	1,800,000	19,800,000
2차	석면해체·제거 90% 도달시	30%	18,000,000	1,800,000	19,800,000
잔금	관련청 완료보고시	10%	6,000,000	600,000	6,600,000
합계	현금지급		60,000,000	6,000,000	66,000,000

6. 업 무 범 위 : 석면해체·제거(비산농도측정포함) 감리 업무

* 계약 당사자는 위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 작성 후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08월 11일

발 주 자(갑)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29, 고려빌딩 501호

상 호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조합장 : 이 동 인 (인)

계약상대자(을)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제티2-504호(웨스턴돔A동)

상 호 : (주)한국석면안전잔탄

대표자 : 이 상 준 (인)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석면해체·제거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석면해체·제거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감리비 지불방법)

감리보수의 지급 기준은 계약서 갑지와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환경부 고시(2016.07.15. 개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를 근거로 업무범위를 정한다.

② "을"은 석면해체·제거 공사일에 감리업무 및 비산농도 측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④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 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① "갑"은 석면철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이 요구할 때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을"에게 자료 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철거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6조(업무의 수행)

①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석면함유자재의 확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감독한다.

②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면조사 보고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감독한다.

③ "을"은 당해 공사가 관계 법경 및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④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⑤ "을"은 공사시공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을"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갑"에게 통보한다.

⑦ "갑"은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공 도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⑧ "갑"은 공사시공자가 "을"의 시정,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7조(석면해체·제거 시공계획서 작성요청)

"을"은 석면해체·제거 업체로부터 석면해체·제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갑"에게 통보한다.

제8조(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갑" 또는 공사시공자가 석면해체·제거 시공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 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안전성, 법적조건, 기타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감리보고서 등)

① "을"은 "갑"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결과를 완료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석면 철거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③ 감리인 지정현황신고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대관 업무 수행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본 과업 수행 중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문서에 명기된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갑"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하도급)

"을"은 "을"의 업무를 하도급 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라도 "을"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기성된 성과를 인도받은 후 기성부분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14조(안전관리)

"을"은 감리업무 진행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제15조("을"의 손해배상책임)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용역업무를 소홀히 하여 "갑"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6조(민원에 대한 책임)

"을"은 용역업무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시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시 협의 조정하며, 소송시에는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습법,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석진플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관리처분(변경)관련 특약

"갑"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이 동 인

"을" : 주 식 회 사 석 진 플 랜
대표이사 박 정 환

위 "갑"과 "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변경 계획 수립과 관련한 특약을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 아 래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리처분변경용역비용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38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지급비율은 계약시 20%, 관리처분(변경) 총회시 30%, 관리처분(변경) 인가시 50%로 한다.

2. "갑"의 업무범위는 2016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내용의 변경으로 하되, 본 계약서 제3조의 제1항 다목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다.

2016년 8월 11일

"갑"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이 동 인 (인)

"을" : 주 식 회 사 석 진 플 랜
대 표 이 사 박 정 환 (인)

문화재표본조사

(국방문화재연구원)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계약서

(문화재표본조사)

2016. 7. 4.

"갑"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을" 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

문화재표본조사 도급계약서

계약당사자	발주자 (도급인)	상 호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28 (중앙동, 1단지내컨테이너사무실)		138-82-67151
		대표자	이 동 인	전화번호	02)504-6800
	계약상대자 (수급인)	상 호	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29		217-82-05502
		대표자	이 재	전화번호	02)971-2561
계약내용	계 약 명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문화재 표본조사			
	계 약 금 액	금 삼천팔백만원정(₩38,000,000) - 부가가치세 별도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 보고서 제출 완료시까지			
	조 사 대 상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원			
	조 사 면 적	73,839㎡			

발주자(과천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와 계약상대자(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문화재조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2016년 7월 4일

발 주 자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이 동 인 ㊞

계약상대자 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 대표자 이 재 ㊞

계 약 일 반 조 건

본 문화재표본조사용역 도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함)이 추진하는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에 대한 문화재표본조사를 위하여, '갑'과 재단법인 국방문화재연구원 (이하 '을' 이라 함) 간에 체결되며, '갑'과 '을'은 다음 조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문화재표본조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보고서 제출 완료시까지로 한다. 단 '갑'의 사정 또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시,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조정·연장할 수 있다.

제3조(용역대가의 지급) (1) 용역비의 지급은 사업시행자인 '갑'이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지급시기	금 액 (부가세 별도)	비율
선 금	계약체결후, 조사 착수전	일금 일천구백만원정(₩19,000,000)	50%
준공금	성과품 납품 및 종료시	일금 일천구백만원정(₩19,000,000)	50%

(2) 상기 용역비는 표본조사 용역비로 '을'은 표본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여도 청구하지 아니하며, '갑'과 '을'은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다.

(3) 상기 용역비는 표본조사 용역비로 정밀발굴조사 필요시 제6조(계약변경)에 따라 용역비 재산정 후 계약을 변경한다.

(4) '을'은 위 각 청구시기에 해당 청구금액을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을'에게 해당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제4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1) 용역 착수 전 '갑'은 문화재 표본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여건을 마련한다.

① 조사 대상지 토지사용권 확보.

② 표본조사 대상지 내 지장물 철거.

(2) 용역 착수시 다음 내용을 '갑'에게 제출한다.

① 착수계 1부.

② 예정공정표 1부.

③ 참여자 명단 1부.

④ 기타 '갑'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장사항) (1)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갑'이 '을'의 피용자가 이 계약하의 용역수행에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용자들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을'의 모든 피용자는 '갑'의 사업장에서 작업 및 출입시 '갑'의 안전, 보건, 환경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용역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을'의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갑'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을'의 피용자, '갑'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으로 보장한다.

제6조(계약 변경) (1) 표본조사 결과 유구 및 유물 등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 필요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한 후 계약을 변경하며, 소요예산과 기간은 별도 산출한다.
(관련법령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2) 표본조사 결과 정밀발굴조사 필요시 '을'은 학술자문회의 또는 전문가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받는다.
(3) 그 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일시정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용역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수급인이 문화재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를 받아야하는 경우(발굴조사로의 전환 등)
④ 기타 용역관련 민원인의 고충을 고려하여 도급인이 요청한 경우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에 "을"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갑' 또는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때

② 일방당사자가 재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 또는 '을'이 판단할 때

③ 일방당사자가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④ 용역비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개시일로부터 해지시까지의 용역비 집행정산서에 의하여 용역비를 정산한다.

제10조(성과품 납품) '을'은 표본조사(현장조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완료신고서 2부.

② 약보고서 5부. (CD 2매 포함)

제11조(기밀유지) (1)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갑'의 사업 비밀 및 기술비밀과 계약상의 용역 성과물 일체의 관련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2) '을'은 계약이 중도해지, 만료 등 여하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갑'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문서에 명기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한 이행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목적

본 용역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문화재 표본조사를 통하여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이후 유적보존·이전복원·공사착공 등 문화유적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개발과 문화재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Ⅱ. 과업 개요

1. 과업명 :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문화재 표본조사
2. 과업대상 지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원
3. 과업대상 면적 : 73,839㎡
4. 조사방법 : 표본조사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보고서 제출 완료시까지

Ⅲ. 과업 내용

1. 대상지역의 매장유구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유물의 수습
2.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인 자료의 연구·분석 및 보고서 작성·제출
3. 출토유물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를 통한 훼손방지
4.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 판단
5. 유적보존·이전복원·사업진행 등의 향후 조치사항을 제시
6. 출토유물의 정리·보관 및 중요유물의 국가귀속 조치
7. 문화재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 대관업무

Ⅳ. 조사의 착수와 방법

1. 본 과업은 일반적인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시 도급인에게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본조사의 진행, 유물의 출토, 유구의 확인과 조사 등 제반과정을 정밀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 조사단의 인력 변동시 도급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조사 진행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및 주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 조사진행, 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8.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단위구역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9. 수급인은 조사진행 중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일시 · 장소 · 참석자 · 회의자료 등을 문화재청과 도급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회의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필요시 도급인과 협의하여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문화재조사 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문화재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인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제반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 및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V. 현장조사 완료 및 보고서 제출

1. 용역기간이 완료될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완료계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완료신고서 2부.

나. 약보고서 5부.(CD 2매 포함)

VI. 기타사항

1. 과업내용서 상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정한다.
2. 과업내용서 상에 언급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약보고서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완지시 등), 수급인은 즉각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 보완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친환경 업체

((주)건축환경에너지평가원 화인)

용 역 계 약 서

계약인	발 주 자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용역수행자	상 호	(주)건축환경에너지평가원 화인	사업자번호	710-86-00023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802호 (가산동,대성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전화번호	02-6278-0410	팩 스	02-6278-0411
		대표자	왕 정 준		
계약내용	용 역 명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녹색건축 예비인증 컨설팅 용역			
	계 약 금 액	일금 이천만원 정 (₩20,000,000)VAT 별도, 접수 수수료 제외			
	계 약 기 간	계약일 ~ 용역 완료 및 성과품 납품 시까지			
	기 타 사 항	용역비 지급방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5조에 의함.			

발주자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자 (주)건축환경에너지평가원 화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8. 11.

발 주 자 (갑)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29, 고려빌딩 501호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동 인 (인)	용역수행자 (을)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B동 1802-2 (주)건축환경에너지평가원 화인 왕 정 준 (인)

계 약 일 반 조 건

제 1 조 (총 칙)

본 계약 조항은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건축환경에너지평가원 화인** (이하 "을"이라 한다)에 의뢰한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녹색건축 예비인증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비 기준과 "갑"과 "을"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그 업무를 정하고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업무의 수행 및 용역범위)

"을"은 상기 용역 과업수행 완료기한까지 위 용역과 관계되는 제반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의거 성실하게 용역을 완수하도록 하며,"을"의 용역범위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업 무 구 분	세 부 수 행 내 용
녹색건축 예비인증	① 자료검토, 대안수립 및 최적화 ② 자체평가서 작성 및 심사, 보완 협의

제 3 조 (지시감독)

"을"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 대하여 상기 용역에 대한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해당용역에 대한 이행을 제 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 5 조 (용역비 지급방법)

1. 본 용역 업무의 보수는 용역계약서에 제시된 지급방식 및 시기에 준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은 용역완료 및 성과품 납품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지급시기 및 금액 (부가세 별도)

구 분	지 급 시 기	비율(%)	지급금액(원)	비 고
계 약 금	계약 체결 시	30	6,000,000	
잔 금	인증완료 및 성과품 납품시	70	14,000,000	
합 계		100	20,000,000	

제 6 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갑"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을"은 해지일 까지 "을"이 수행하였던 성과품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은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할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 7 조 (권리귀속)

"을"이 본 계약과 관련 작성한 모든 도서 및 자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8 조 (용역변경 등)

1.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용역범위의 추가, 감소 또는 설계기준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용역대금의 변경 및 용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갑", "을"이 협의하되 변경사항은 합의서로서 작성, 계약서의 일부로 보관한다.

2.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집행한 용역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경우 제비용은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제 9 조 (성과품의 제출)

1. 용역 완료 후 "을"은 "갑"에게 최종 완료 보고서 2부, 관련 파일 CD 2매를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이 제출한 용역 성과품이 발주처의 과업지시 내용에 미달한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하자책임)

"갑"은 "을"의 용역완료 후 용역수행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을"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기 타)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습, 및 민법 상법에 의하며, 중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며,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Ⅳ. 기타서류

대 리 참 석 위 임 장

위임인(조합원)

소유물건	동 호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상기 본인은 2016년 9월 4일에 개최하는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총회 참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은 조합원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 해외거주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법인소유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조합정관 제22조 제4항)

※ 대리참석자는 조합원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

절취선

2016년 월 일

위임인(조합원) 성명 : (인감날인)

수임인(위임받는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조합원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 (위임하는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합원 또는 대리인만 총회에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참석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총회 당일 제출하고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